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2.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7월 26일, 정부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11.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사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가결)

제1차 전체회의(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
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부장관 김완섭)

다목적댐 건설로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건설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수익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과 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부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다목적댐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으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9. 9. 7. 제정) 이후 건설된 다목적댐의 하류 지역 발전사업자(부과대상)가 없어 현재까지 수익자부담금 부과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¹⁾, 부담금을 폐지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1) 舊 「특정다목적댐법」 (1966.5.24.제정, 1999.9.7.폐지)*에 따라 소양강 다목적댐(‘73년 준공) 건설 시 하류 발전사업자인 한국전력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으나, 현행법(「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음.

* 「특정다목적댐법」 제10조 (수익자부담금) ①건설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당해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범위, 부담금산출 및 징수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부칙의 시행일(2025년 1월 1일)이 경과한 상황에서 현행법 제정 이후 건설된 다목적댐의 하류 지역 발전사업자(부과대상)가 없어 현재까지 수익자부담금 부과 사례가 없는 등 재정적 영향이 미미하므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한 수정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중 “2025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u>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u> <u>시행한다.</u>	부칙 ----- <u>공포한 날부터</u> ----- -.

법률 제 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담금·가산금”을 “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부담금·가산금”을 각각 “부담금”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 수익(댐건설 완료 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예상 증가수익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해당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금으로 결정·부과할 수 있다.</u> <u>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수익자</u>	<u><삭 제></u>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
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산출방법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수익자부담금 등 결정·

부과의 취소·변경 및 반환) ①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이
하 이 조에서 “수익자부담금
등”이라 한다)이 결정·부과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이 폐지되었을 때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
부담금등을 부담할 자가 해
당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3. 댐건설 완료의 고시 당시 해
당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되
거나 변경되어 해당 다목적

<삭 제>

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때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23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을 부담할자의 예상 수익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등을 낸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수익자부담금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된 수익자부담금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취소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등의 결정·부과가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등이 감소한 경우

제23조의3(수익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삭 제>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가산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부담금-----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4.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u>부담금·가산금</u>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u>부담금·가산금</u>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3.4. (현행과 같음) ② ----- ----- -----<u>부담금</u>----- ----- ----- -----. ③ -----<u>부담금</u>----- ----- ----- -----.
---	--